

제30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21. 3. 15.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개정이유

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재정부담 및 시설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안정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대(안 제6조)

- (당초)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지원 ⇒ (변경) 지원 제한 규정 삭제

나. 시설개선 지원사업 군비 부담비율 제한 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)

- (당초)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지원 ⇒ (변경)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다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 정비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써 각 호에 해당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“신청일로”를 “신청일”로, “영위”를 “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설개선 등의 총 사업비의 50퍼센트”를 “예산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기타”를 “규모, 선정기준, 지원절차 및 그 밖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특례보증 지원대상)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<u>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써 각 호에 해당하는</u>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제9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<u>신청일로부터</u> 최근 2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. 다만 창업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<u>시설개선 등의 총 사업비의 50퍼센트</u> 범위에서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</p> <p>제11조(지원의 제외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</p>	<p>제6조(특례보증 지원대상)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신청일</u>----- ----- ----- <u>운</u> <u>영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예산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1조(지원의 제외) ----- ----- -----</p>

1. (생략)

2.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3. ~ 8. (생략)

제12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

1. (현행과 같음)

2. 관계 법령 -----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 -----

----- 규모, 선정기준, 지원절차 및 그 밖의 -----

